2024년 폭력예방교육 안내





인권센터 소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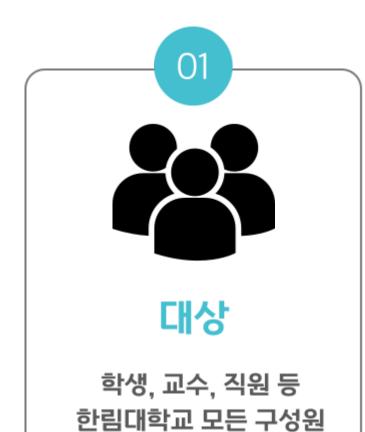
한림대학교 인권센터는 2022년 6월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이고 건강한 대학 문화 및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.



인권센터 이용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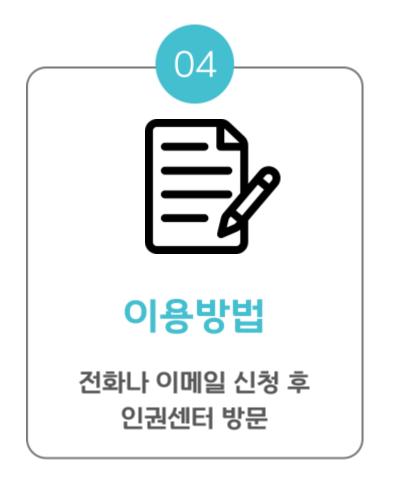


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. - 세계인권선언 제1조-









전화: T.033-248-3791, 3792

E-mail: hhrc@hallym.ac.kr

인권센터 신고안내





■ 신고는 실명 신고가 원칙이며, 제3자가 신고한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사 여부가 결정됨 (기타 특수한 사건의 경우 직권조사 가능)

■ 모든 신고와 접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진행되나, 수사기관의 요청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보가 이관될 수 있음

■ 센터에 신고, 진술, 자료제출, 증언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음

■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간 분리, 피신고인에 대한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

사건처리 절차안내



상담(신고) 신청

-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신청 후 방문
- 실명 신고 원칙

상담실시

상담종결

(피해자 중심, 피해자보호원칙)

사건 신고 및 접수 (사실확인 및 관련인 면담)

중재·조정 처리

- 인권센터를 통한 당사자간 합의서약
- 실패 시 심의위원회 회부

심의(조사)위원회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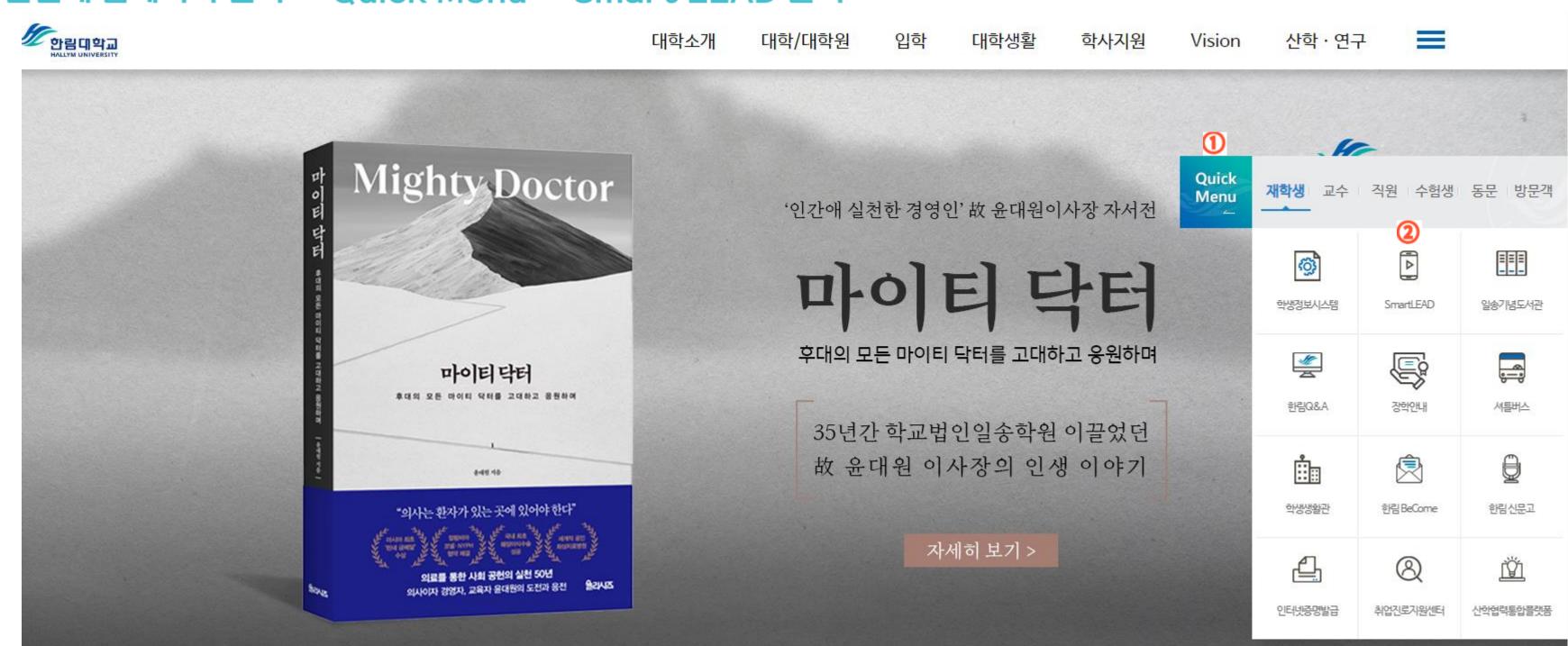
- 위원회 조정 및 심의
- 행위 사실 판단 및 의결
- 조치 권고 또는 징계 발의

사건 종결 및 추후 관리





한림대 홈페이지 접속 → Quick Menu → Smart LEAD 클릭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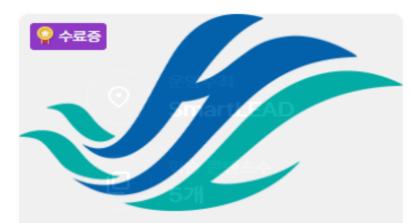
한림대학교 Smart LEAD 시스템 로그인(https://smartlead.hallym.ac.kr) 그룹웨어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







2024 폭력예방교육 (법정교육) 교직원용



2024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...



2024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...



2024 폭력예방교육 (법정교육) 간호학과







😭 수료증



💡 수료증



2023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Staff,...

2023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Staff, Professor(Ch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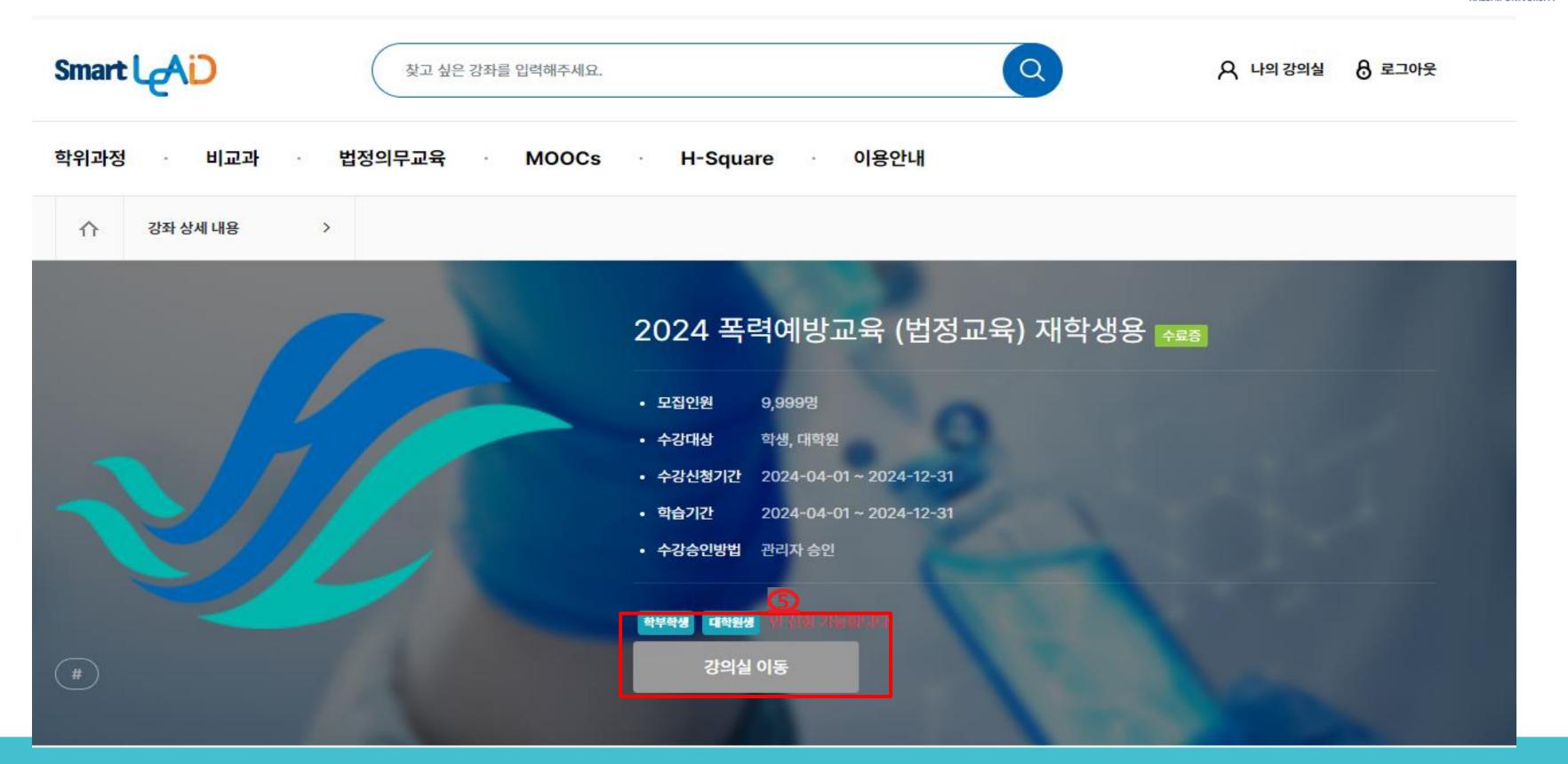
2023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Staff,...

2023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Staff, Professor(Eng)

2023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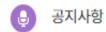
2023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(Chn)







※ 동영상 시청, 형성평가, 만족도 조사까지 모두 완료해야 최종 이수 처리 됨



osA 강좌 Q&A

주제 별 학습 활동

전체



2024 폭력예방교육 통합교육 2024-04-01 00:00:00 ~ 2024-12-31 23:59:00, 01:12:38

()

2024 폭력예방교육 형성평가

필수로 응시하셔야 하며 형성평가 점수는 이수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주제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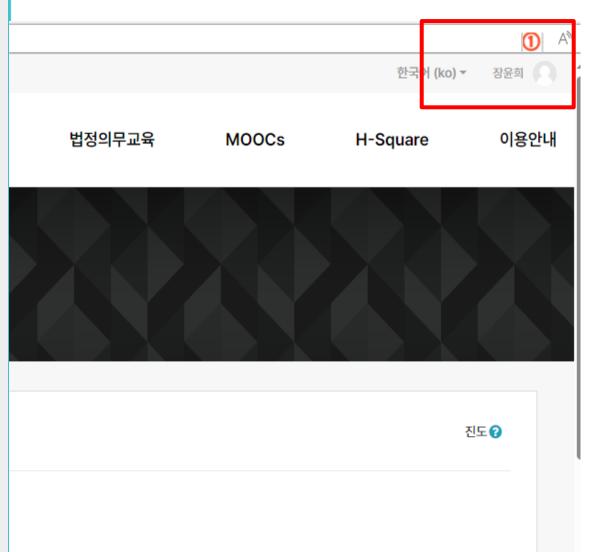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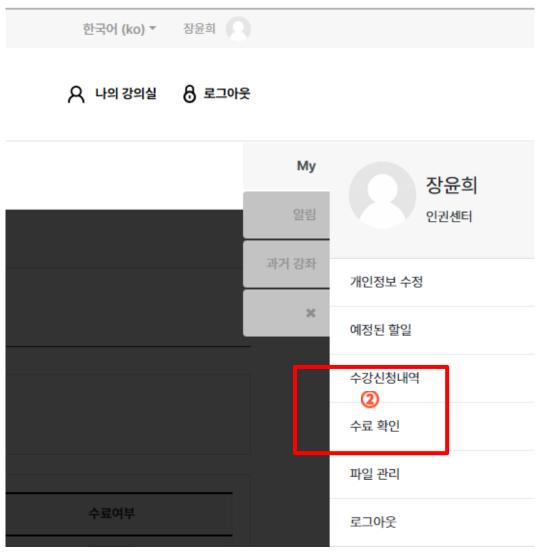
교육 만족도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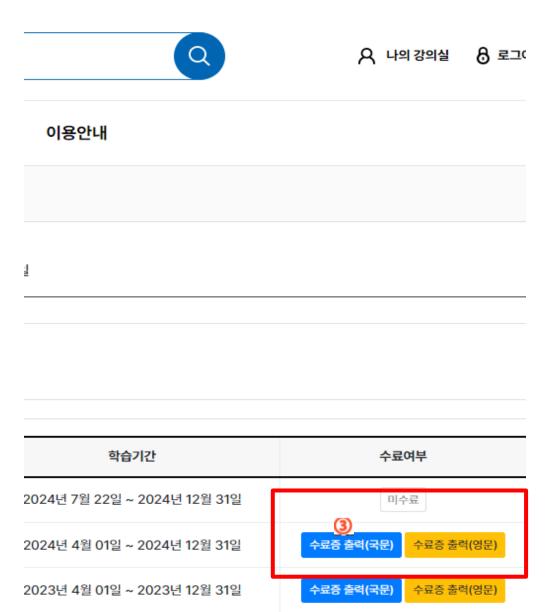
교육 만족도 조사까지 응답하셔야 이수처리됩니다.



※ 수료증 출력 방법 -> 1. 이름 클릭 -> 2. 수료확인 클릭 -> 3. 수료증 출력









1.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(성희롱방지조치 등)

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,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.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2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

-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초·중·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(이하 "국가기관등의 장"이라 한다)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(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되, 초등학생은 제외한다)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,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관·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3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해당기관·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,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(이하"성폭력 예방교육"이라 한다) 실시. 이 경우 기관·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4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 2
-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초・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(이하 "국가기관 등의 장"이라 한다)은 해당 기관・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,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관・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 7. 16.〉

한림대학교 인권센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:)



